

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

의안 번호	1746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년 8월 12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격려하고 국제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- 나.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(제4조)에 의거 명예시민 수여대상자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추진경과

- 2020.6.8 ~ 7.17 명예시민 추천공고 및 접수(총29개국 37명)
- 2020.7.29 2020 명예시민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
(추천자 37명 중 19명 선정)

나. 선정결과 : 총 19명(남 14명, 여 5명) ※ 세부명단 별첨

- 국적별 : 17개국(※ 국가별 가나다순)

네팔	1	방글라데시	1	스페인	1	탄자니아	1
대만	1	베트남	1	아랍에미리트	1	프랑스	1
독일	2	벨기에	2	아일랜드	1		
러시아	1	불가리아	1	인도	1		
말레이시아	1	브라질	1	콜롬비아	1		

다. 향후일정(안)

- 2020.11.5. 「2020 명예시민의 날」 기념식 개최 및 수여

라. 관련근거

1) 수여대상 : 「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」 제2조

- 서울특별시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중 서울특별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서울특별 시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자
-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외국인

※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주요건 등을 완화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음

2) 수여대상자 결정 : 「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」 제4조 제1항

-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은 공공단체의 장, 사회단체의 장 또는 30인 이상의 연서로 추천된 자 중에서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

3) 서울시의회 동의 : 「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」 제4조 제2항

- 시장은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.

※ 다만, 시의회가 폐회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시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음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※ 작성자 : 국제교류담당관 미주구주팀 한나라(☎ 2133-5285)